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관련

- 가. (복지부)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(보육기반과-2267, '20.3.31.)
- 나. (교육부)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등 운영방침 : 대학 학사운영 권고(대학학사제도과-3695, '20.3.4.), 출석수업 기반 학점은행제 운영 권고(평생학습정책과-2269, '20.3.6.), 교육실습(학교현장실습) 운영 안내(교원양성연수과-1706, '20.3.24.)
- 다. (복지부)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에 따른 보육교사 양성기관 교육운영 보완 검토 보고(보육정책과-2982호, '20.4.29.) 및 적극행정위원회 결과공문(혁신행정담당관-1284호, '20.4.30.)
- 라. (복지부) 코로나19로 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현장실습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(보육정책과-2254, '20.3.27.)
- 마. (복지부) 코로나 19 집단시설 ·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(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-3399, '20.3.27.)

2.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어린이집 휴원 연장(위 가호) 및 교육부의 대학 등 2020학년도 1학기 운영 권고 및 교원양성과정의 기 교육현장실습 과정 운영 상황(위 나호) 등을 고려, 2급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2020년 1학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운영가능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.

3. 이에, 교육부(관련 과)에서는 대학 등 학사정책 운영에 참고하시고, 관련 기관(산하 기관 포함) 및 단체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라호로 기 제출한 바와 같이 양성기관에서 종강 시까지(또는 성적 처리전까지) 실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, 종강 이후 현장실습 연속 진행 허용 및 성적 수정이 가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등에 안내하고, 양성기관에서 자격인정 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면교과목 운영방식 변경 · 이행 시 보고받는 등의 적합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대면교과목(8개, 보육실습 제외) 운영

*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

- 출석수업(대면교과목은 8시간 이상, 1회 시험) 원칙, 다만, 상시 집합수업 곤란 시
① 집중수업(총 수업시간 준수), ② 실시간 화상 수업(비동시 수업 제외) 실시 가능
(단, 시험은 출석시험(대면)으로 실시)

○ **보육현장실습 운영**

-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을 진행, 2주는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보육 현장실습 대체운영 가능

○ **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**

- 위 마호 등을 참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
-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
- *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, 교육 이행확인·점검, 교·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·관리 철저
- 집중수업 또는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 시, 계획 수립 이행조치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 필요

붙임 : (참고) 온라인 콘텐츠 예시 및 교육부 관련 지침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교육부장관(평생학습정책과장), 교육부장관(이러닝과장), 교육부장관(교원양성연수과장), 교육부장관(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), 교육부장관(전문대학정책과장), 교육부장관(코로나19대 학긴급대응팀장), 교육부장관(대학학사제도과장), 한국보육진흥원장,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

주무관 최상미 공공보육팀장 전결 2020. 5. 1.
백경순

협조자

시행 보육정책과-2986 (2020. 5. 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인구정책실 공공보육TF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3554 팩스번호 044-202-3973 / csm222@korea.kr / 비공개(5)